

인터넷 이용 무역거래 특허

- 미국 -

미 특허상표청은 버지니아주 소재 'DE 테크놀러지'라는 벤처기업에 인터넷 무역 전반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를 인정한다고 통고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상표청은 특허 인정 통고후 이변이 없는 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특허권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자들은 향후 이 회사에 특허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인 이 특허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관세·수수료 등을 계산, 결제 수속을 완결하는 인터넷 거래 방법 전반을 포괄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수출입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 대부분은 이같은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 "이 회사는 현재 미국 외에 유럽 등31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면서 전자상거래 기업 대부분이 이 특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는 인터넷 무역결제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IBM 등 미국의 대형 컴퓨터 회사 등에 1차적으로 특허사용료 계약 체결을 추진중이다.

특허권 보호 대폭 강화

- 중국 -

중국이 WTO가입을 앞두고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유기업에도 특허권 소유를 인정하는 등 특허법을 대폭개정한다.

중국 특허청(國家知識產權局)은 WTO 가입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 맞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특허법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항을 강화, 삽입하는 한편 특허심판, 행정심판을 통해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전에는 기업이 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새로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다른 발명자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 배상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불 조항을 강화했다.

중국은 또 종전에는 '인민의 공동 지적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 국유 기업의 특허권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허권을 보유(holding)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국유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 및 발명가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직무발명 조항을 신설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연구원 및 발명가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허관련 국제간 협력 주도

- 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관(WIPO)이 인터넷 시대에 대응한 특허 제도의 국제간 협력을 위해 각국간 조정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WIPO는 특허출원 수속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특허법 조약」이 올 6월 채택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내부의상설위원회에서 각국간 특허제도의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이 상설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특허 심사방법의 확립 △각국 특허당국에 의한 심사결과의 공유 △가맹 각국에서 통용하는 「세계 특허」제도 창설의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WIPO는 이미 지난 80~90년대에 걸쳐 특허 제도의 국제적 협의를 중재했으나 각국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WIPO의 이번 조정은 「글로벌화의 진전」을 위한 제도전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특허심사에서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 유무가 권리를 인정받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각국은 그 신규성 여부를 주로 학술 잡지 및 문헌에 게재된 선행 기술정보를 조사해 판단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도 특허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WIPO는 인터넷에 특별한 규약을 적용

해 특허심사 방법으로서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터넷 공개기술을 특허 판단의 재료로 이용한다고 결정한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불과하다. WIPO는 또 각국 특허당국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유 및 세계 특허도 추진한다.

공통의 특허 처리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특허는 각 국가별로 출원·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모델 특허 등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복수국가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 등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WIPO는 심사 결과의 교환 및 가맹국간의 공유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허 제도의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 국가에서 특허가 성립되면 국제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세계 특허」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계 경제계는 인터넷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도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특허 제도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영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통신정책의 전개 - IT혁명에 의한 일본경제의 新生

1. 우리는 지금 이미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필적할 「IT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IT는 사회경제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며, IT활용과 보급에 의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추진의 可否가, 21세기를 향한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열쇠이다. 「글로벌정보사회에 관한 오키나와현장(IT현장)」(2000년 7월)에도 나타나있듯이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며, 구미·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IT혁명의 추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차세대 인터넷에 관한 연구개발 비즈니스 Application을 보급·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전·신뢰성이 높고, 초고속·대용량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차세대 인터넷에 관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 스페이스인터넷기술의 연구개발- 위성에 의한 정보의 축적과 경로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지구를 둘러싼 우주공간에 인터넷을 확충하기 위하여 위성탑재가 가능한 서버등의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2. 일본으로서도, IT혁명의 성과를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IT立國」형성을 목표로, 국민이 총력을 집결하여 전략적,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2001년을 향한 정보통신정책에 있어서는, 다음 4가지의 관점에서 전개하여 나간다.

(1) IT혁명을 뒷받침할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 전국민이 최첨단의 IT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활용하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중

합적인 기반정비를 추진한다.

- 2005년까지 전국민이 장소를 불문하고 초고속의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정보의 입수·처리·발신을 안전·쾌속·간단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실현
- 2000년까지 정액·광역서비스의 전국전개에 필요한 규제상의 조건정비를 함과 동시에 2005년까지 광케이블망의 전국설치를 실현
- 2003년까지, 민간으로부터 정부, 정부로부터 민간에의 행정수속을 인터넷을 이용하고 종이가 사용되지 않는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

(2)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연구개발 : IT혁명이 발전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 경제사회의 국제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New Business의 창출에 투자할 기술개발에 중점투자를 한다.

- 다양한 IT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고속전기통신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음악·영상등 디지털컨텐츠 서비스, ASP서비스 등 새로운 IT시장 창출을 가속, 추진한다.

(3) 정보 보안대책의 추진

사회경제활동의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히 확대하는 가운데, 해커·사이버테러대책을 비롯하여 정보 보안확보를 위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분쟁조정센터

- 도메인네임분쟁 중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

tion)의 분쟁조정센터(The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종 분쟁뿐 아니라 도메인 네임을 선점해 등록한 뒤 다시 비싼 값으로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이버스쿼터(Cybersquatter) 및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WIPO의 도메인네임 중재는 작년인 199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900건을 넘어 1000건에 이르는 분쟁 중재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절반이상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으며, 약 80%가 원고의 주장대로 취소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PO의 중재센터의 판정으로 인해 크리스찬디올, 독일은행, 마이크로소프트, AT&T, 야후, 나이키등이 자사의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되찾았다. WIPO에서는 약의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분쟁사건에 돈이 많이 걸린 경우 값비싼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기업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찾기 위해 등록 취소 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분쟁중재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2000년 11월 9일, 10일 이틀에 걸쳐 중재자의 기본교육을 위한 강도높은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문적인 국제적인 중재자가 WIPO의 분쟁 중재 규칙 및 국제 상거래중재법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강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WIPO에서는 2000년 11월 6일 및 7일 이틀동안 전자상거래 시대의 국제분쟁해결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DVD 온라인 저작권 소송 - 2600.com, 2600.com v. MPAA (00Civ. 0277(LAK))

최근들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디지털저작물의 온라인 불법복제 소송은 MP3에 관련된 일련

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건과 DVD영화에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음악저작물에 관련된 사건은 자유로운 MP3의 교환을 가능케한 냅스터(napster) 사건과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두었다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MP3.com의 서비스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MP3.com은 원고측 회사들과 저작권에 대한 협상을 벌여 배상액과 곡을 다운받을 경우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소송자들과 원만하게 해결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냅스터측은 원고측의 예비금지명령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DVD영화의 불법복제 문제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DVD영화의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인 CSS를 무력화시키는 DeCSS의 소스가 인터넷상에 배포되어 전미영화협회의 회원사들이 이들 웹사이트의 소유주 및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지난 1월 연방판사인 카플란 판사(Lewis Kaplan)가 그 배포를 중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번 2000년 8월 17일 미 뉴욕남부지원에서는 또다시 DVD의 불법복제 방지 기능을 해독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공개한 2600.com의 Eric Corley(2600.com)에 대해 DeCSS4) 코드제공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심리에서 카플란 판사는 컴퓨터코드가 미 수정헌법제1조(The First Amendment)5)에 의해 언론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오늘날처럼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 시스템이 마비될수 있는 사회에서는 컴퓨터코드의 이용과 배포는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6)고 의견을 밝히고 컴퓨터 코드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에서는 카플란 판사의 수정헌법제1조에 대한 해석은 그릇된 것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냅스터 사건 및 MP3.com, DVD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홈페이지에서 사건별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미 FBI의 이메일감시 프로그램인 카니보어(Carnivore)

미국의 FBI에서 지난 3월부터 사용해온 이메일감시시스템인 카니보어(Carnivore)가 개인정보 보호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FBI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FBI의 엔지니어들이 상용 이메일탐색프로그램에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해왔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세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보호단체인 EPIC(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에서는 FBI에 카니보어의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미 법무부에서는 오는 9월25일쯤 민간전문가와 조사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12월 8일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자넷 르노 미법무장관은 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사 수행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법무부에서는 '카니보어'가 온라인상의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EPIC, 미국인권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및 일부 의원들은 불법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 4조(The U.S. Constitution's Fourth Amendment protections against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 "Deep" 링크 허용 PCM v. Kranten.com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위의 "DVD온라인저작권소송-2600.com"과는 반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상의 '딥

링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의 사건에서 연방판사는 DeCSS의 링크제거를 명령한바 있으나 네덜란드가 이번 판결에서는 딥링크를 사용하는 행위는 뉴스기사를 다른 미디어가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네덜란드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며, 신문스크랩을 배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결론지었다. 이번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링크분쟁은 크란텐닷컴이 PCM을 비롯한 다른 온라인 뉴스신문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각 신문사들의 헤드라인만으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헤드라인을 클릭하면 직접 해당신문의 기사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PCM이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웹사이트에 링크를 허용한 사건이나 관계자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작은 국가이고 따라서 이 판결결과가 전 유럽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는 달리 올해초 KPN텔레콤(KPN Telecom)사건에서는 네덜란드의 데이터베이스법을 근거로 자사의 온라인전화번호부를 딥링크한 웹사이트에 대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독일 전자서명법안 승인

독일내각이 8월 17일 전자상거래를 원활케 하기 위한 전자서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법률(European Union laws on e-commerce)을 따르고 있다.

베르너 뮐엘러(Werner Mueller) 독일 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자서명법은 유럽의 단일전자상거래 시장 완성을 위한 결정적 과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법안이 올가을 독일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